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의 요청·실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 직위(안 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안 제5조)
- 회부, 기간 및 질의 등 인사청문 절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검증, 공개 및 답변거부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준용규정(안 제18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8. 18. ~ 2026. 8. 25. (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